

## 일본의 일반 교통 방해죄

정보신청기관 : 법무부 국가송무과

### I. 일본의 왕래방해죄의 개요

#### 1. 왕래방해죄의 체계

대한민국 형법 185조~191조의 교통방해의 죄에 해당하는 일본의 왕래방해죄는 일본 형법 제124조~제129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124조는 왕래방해 및 동치상죄,<sup>1)</sup> 제125조<sup>2)</sup>는 왕래위협죄, 제126조<sup>3)</sup>는 기차전복 등 및 동치사죄, 제127조<sup>4)</sup>

는 왕래위협에 의한 기차전복 등, 제128조<sup>5)</sup>는 미수죄, 제129조<sup>6)</sup>는 과실왕래위협죄이다.

왕래방해죄는 교통시설 혹은 교통기관에 공작을 가하여 안전을 해하는 죄이다. 제124조가 일반왕래방해죄이며, 제125조와 제126조는 그 가중처벌유형이다. 제125조는 철도교통 또는 해상교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유형이며, 제126조는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



- 1) 제124조 제1항: 육로, 수로 또는 다리를 손괴 또는 폐색하여 왕래를 방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전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한 자는 상해의 죄와 비교하여 무거운 죄에 처한다.
- 2) 제125조 제1항: 철도 또는 그 표식을 손괴 또는 기타 방법으로 기차 또는 전차의 왕래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항:등대 또는 부표를 손괴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함선 왕래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3) 제126조 제1항: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 또는 전차를 전복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사람이 현존하는 함선을 전복, 침몰 또는 파괴한 자도 전항과 같다.  
제3항: 전 두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4) 제127조: 제125조의 죄를 범하여 기차 또는 전차를 전복 또는 파괴 또는 함선을 전복, 침몰 또는 파괴한 자도 전조와 같다.
- 5) 제128조: 제124조 제1항, 제125조와 제126조 제1항, 제2항의 죄의 미수는 별한다.
- 6) 제129조 제1항: 과실로 인하여 기차, 전차 또는 함선의 왕래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또는 기차 또는 전차를 전복, 또는 파괴하거나 또는 함선을 전복, 침몰 혹은 파괴한 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차, 함선의 내부에 있는 사람에 대해 위협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유형이다. 제127조는 제125조의 가중처벌유형이다.

왕래방해죄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은 교통의 안전이지만, 침해 행위에 의해 교통기관의 이용자 등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는 점에서 공공위험죄의 성질을 띄고 있다. 조문의 위치도 방화죄와 출수 및 수리에 대한 죄에 이어서 규정되어 있다.

## 2. 왕래방해죄의 연혁

그러나 왕래방해죄가 처음부터 공공위험죄로 분류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메이지 13년(1880년) 제정된 구형법은 왕래통신방해죄를 공익에 관한 죄의 평온을 해하는 죄로, 가옥·기차·선박에 대한 방화죄와 선박전몰죄를 신체재산에 대한 죄 안의 재산에 대한 죄로 분류하고 있었다. 이 분류는 당시의 프랑스 법전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현행형법은 독일 법전의 영향을 받아, 선박전몰죄를 왕래방해죄와 함께 규정된 후, 방화죄, 출수, 수리 방해의 죄의 다음에 놓아 이들 죄의 공공위험죄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선박전몰죄와 방화죄는 성질상 불특정다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협이 있으므로 공공의 안녕을 해하는 죄라고 인정하여 재산죄



7) 고속도로, 신칸센 철도, 항공교통은 각각 「도로교통법」, 「고속국도법」, 「신칸센 철도의 열차운행의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 처벌에 대한 특별법」, 「항공의 위협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의 처벌에 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8)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고도화에 따라, 현행형법 제정시(1907년) 고려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대규모의 형법 개정을 추진하여, 1974년 법제심의회총회가 개정형법초안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사회 각계의 비판에 직면하여 아직껏 국회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에서 분리한 것이다. 그 밖에 구형법과 현행형법의 다른 점은, 현행형법이 과실왕래위험죄를 새로 제정하였다는 것과 통신방해죄를 특별법에 의해 제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의 왕래방해죄는 도로와 철도 등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을 뿐, 그 외는 특별법에 의해 규제하고 있다.<sup>7)</sup> 교통로에 대해서는 육로, 수로, 다리에 대한 왕래방해만을 규정하고 있어, 항공로에 대한 왕래방해는 포함하지 않는다. 교통기관에 대해서도 기차, 전차, 함선의 왕래위험죄 또는 전복, 침몰, 파괴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자동차, 로프웨이, 항공기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는 형법 제정 당시(메이지 40년, 1907년)의 교통 시설, 교통 기관의 발달의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된 것만을 제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메이지 40년 제정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항공기, 자동차 등의 운행에 대한 교통의 방해행위가 형법전에 규정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 3. 개정형법초안<sup>8)</sup>의 왕래방해죄

개정형법초안은 각론 제13장에 왕래방해죄를 교통방해죄와 교통위험죄로 분할한 후, 두 죄의 교통로를 사람 혹은 교통기관의 교통에 사용되

는 일체의 교통로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의하여 항공로, 기차, 전차의 궤도, 로프웨이의 케이블도 교통로에 포함되었다. 또한 본 초안은 교통로의 표식, 기타 부속물을 손괴, 제거 또한 변경하여 교통 방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통위험죄의 보호의 객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기차, 전차, 선박 외에 로프웨이 리프트, 버스, 항공기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과실에 의한 기차, 선박, 항공기의 교통 방해죄의 객체에는 버스, 로프웨이 리프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무성은 그 이유를, 버스에 대해서는 일반 통행인의 작은 부주의에도 적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고, 로프웨이 리프트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과실범을 처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법정형의 변화는 기차 등 전복치사죄의 사형을 폐지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한 점이 있다.

또한 개정형법초안은 제14장에 선박 또는 항공기의 강탈 또는 운행지배의 죄의 장을 신설하여 선박, 항공기의 강탈, 운행지배 등의 죄, 동미수죄, 예비죄, 선박 항공기의 운행저해의 죄를 더하여, 하이제크, 시제크 행위를 형법전의 죄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개정형법초안에 규정된 이상의 죄는 특별법에 의해 규정, 처리되고 있다.

## II. 일반왕래방해죄와 동치사상죄

### 1. 일반왕래방해죄

일반왕래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다리를 손괴 또는 폐색하여 왕래를 방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24조 제1항)라고 규정되고 있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일반왕래방해죄는 육상, 수상의 교통을 방해하지만 교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행위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제125조의 왕래위험죄에 비하여 법정형이 가볍다.

일반왕래방해죄는 ① 육로, 수로, 다리를 ② 손괴, 폐색하여 ③ 왕래의 방해를 발생시킨 때에 성립한다.

① 육로는 도로를 의미하며, 도로법상의 도로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실제 사람과 차마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라면 된다. 판례는 일반공중(불특정다수)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도로는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허용하더라도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도로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저택 내의 통로는 방문객의 통행이 가능하다고 해도 육로는 아니다. 철도는 육로이지만 제125조에 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124조의 육로에서는 제외된다.

수로는 선박 등의 운행에 쓰이는 하천, 운하, 항구(수상교통로)를 의미한다. 해로와

호수의 수로는 파괴, 폐색할 수 없기 때문에 수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지만,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수심이 얇거나 좁은 것은 손괴, 폐색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로 등을 전부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일반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다는 것은 육로의 경우와 같다. 또한 제125조 이하의 함선에 포함되지 않는 작은 규모의 도주는 수로에 포함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교통 왕래의 수단일 뿐인 도주 자체를 수로에 포함하는 것은 법문의 문리상 무리가 있다는 견해가 통설이다. 다리에는 육교와 잔교가 포함되지만 철도교통에만 쓰이는 다리는 제125조의 객체이므로 제124조의 다리에서 제외된다. 육로, 수로, 다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불문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제124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왕래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육로 등을 손괴 또는 폐색할 필요가 있다. 위계(허위의 통행금지 간판을 세우는 등)에 의해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sup>9)</sup> 손괴는 폭파행위 등에 의한 물리적 파괴에 한정된다. 일부분만을 파괴한 경

우에도 왕래방해를 야기할 정도의 파괴라면 본 죄를 구성하며,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손괴는 미수죄를 구성한다.

폐색은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왕래의 불능 또는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도로 등을 부분적으로 차단한 경우에도 왕래의 불능 또는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폐색에 해당하며(폐색에 의한 왕래방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차단이 필요하며, 도로상 부분부분 간판을 방치한 행위는 장애물을 회피하여 왕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재판례가 있다), 왕래의 위험을 초래하는 물건(염상 또는 폭발 위험의 자동차)은 폐색용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폭행, 협박으로 통행을 차단하거나, 집단으로 도로 중에 앉아서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폐색이 아니다.<sup>10)</sup>

- ③ 왕래의 방해는 육로의 손괴, 폐색에 의해 통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를 말한다. 물리적으로 왕래를 곤란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포함되지만, 도로를 더럽혀서 통행인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심리적 불쾌감을 주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학설이 있다. 손괴, 폐색 자체는 물리적 행위에



9) 경범죄법 제1조 제33호 위반이 된다.

10)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으로, 도로교통법 제120조 제1항 제9호, 제76조 제4항 제2호가 있다. 수로에 대한 폐색에는 다르지 않는 전단계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경범죄법 제1조 제7호가 있다. 도로에 대하여 교통의 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물건을 함부로 두는 행위의 처벌에는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1항 제12호, 제76조 제3호가 있다.

의할 필요가 있지만, 그 결과로서의 왕래 곤란의 상태를 통행인의 심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것은 124조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유력하다. 왕래의 방해가 가별적인 정도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왕래방해의 상태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왕래방해의 상태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가 있지만(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 통행인, 차량의 통행이 없어서 실제로 왕래 방해가 일어나지는 않은 경우에도 본 죄는 성립한다.

## 2. 왕래방해치사상죄

왕래방해치사상죄는 「제124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한 자는 상해의 죄와 비교하여 무거운 죄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4조 2항). 본 죄는 제124조 1항의 일반왕래방해죄의 결과적 가중범이다. 학계의 통설은 사람의 사상은 왕래방해의 결과에 의하여 발생할 것을 요구하며, 손괴, 폐색행위 자체에서 사상의 결과가 생긴 때에는 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판례는 국고 보조금을 획득하기 위하여 위법의 하량공사를 하던 중, 하량이 낙하하여 작업인과 통행인을 사상시킨 사안에 대하

여 본 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다. 이는 손괴 행위 자체에서 사상의 결과가 생긴 때에도 본 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입장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하량이 낙하하기 전에 이미 왕래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본 죄 성립이 인정된 사안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본 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왕래방해죄의 기수가 필요하며, 사람의 사상의 결과에 대한 예견은 필요 없고, 또한 예견이 없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예견이 있는 경우에는 살인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하여 일반 왕래방해죄와의 관념적 경합의 관계가 된다.

## Ⅲ. 왕래방해죄의 특별법

일본 형법의 왕래방해죄는 제정 당시의 교통시설, 교통기관의 발달상황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최근의 교통시설, 교통기관의 발달(특히 교통기관의 고속도화,<sup>11)</sup> 항공기 이용의 일반화)에 대한 대응이 미약한 측면이 있다. 또한 일반왕래방해죄의 구성요건을 한정하여 죄형법정주의와 법문 해석상의 문제를 회피한 반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지나치게 한정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일본은 왕래



11) 교통기관의 고속도화의 결과, 교통기관에 대한 공격행위에 의해서는 물론 교통시설에 대한 공격행위에 의해서도 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방해죄의 각종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하, 일반왕래방해죄의 특별법을 중심으로 왕래방해죄에 대한 특별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반왕래방해죄의 특별법은 도로 또는 도로표식을 손괴, 이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교통방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도로관리자가 설치한 도로표식 등을 이전 또는 손괴한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99조가, 공안위원회가 설치한 도로표식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15조가, 고속자동차국도에 대해서는 고속자동차국도법 제26조<sup>12)</sup>가, 도로운송법의 자동차도에 대해서는 도로운송법 제100조<sup>13)</sup>가 규정하고 있다.

1. 도로법 제99조: 「합부로 도로(고속자동차국도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동일)를 손괴 또는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도

로의 효용을 해하거나 도로에 대한 교통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조에 도로표식이라는 용어가 없는 것은 도로관리자가 설치한 구획선은 도로의 일부라고 해석되고 있으며, 도로표식은 도로의 부속물에 들어간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로관리자에게 설치권한이 있는 도로표식 등을 이전 또는 손괴한 때는 도로법 제99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2. 도로교통법 제76조<sup>14)</sup>: 「제76조 1항: 누구도 신호기 또는 도로표식 등 또는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물건을 합부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2항: 누구도 신호기 또는 도로표식 등의 효용을 방해하는 공작물 또는 물건을 설



- 12) 고속자동차국도법 제26조 제1항: 고속자동차국도를 손괴 또는 고속자동차국도의 부속물을 이전 혹은 손괴하여 고속자동차국도의 효용을 해하거나 또는 고속자동차국도에 대한 교통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미수죄는 별한다.
- 13) 도로운송법 제100조 제1항: 자동차도 또는 표식을 손괴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자동차도에 대한 자동차의 왕래의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미수죄는 별한다.  
제3항: 합부로 68조 5항에 규정하는 도로 표식과 유사 또는 그 효과를 방해할 만한 공작물을 설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4) 제76조 제3항: 누구도 교통에 방해가 될 방법으로 물건을 합부로 도로에 놓아서는 안 된다.  
제4항: 누구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호: 도로에서 술에 취해서 교통의 방해가 되도록 비틀거리는 것  
제2호: 도로에서 교통의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잠을 자거나, 앉거나, 웅크리거나 또는 서 있는 것  
제3호: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구기, 롤러 스케이트 또는 이에 유하는 행위를 하는 것  
제4호: 돌, 유리병, 금속조각 기타 도로상의 사람 또는 차량 등을 손상할 위험이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것

치해서는 안 된다.

(별칙: 제108조 제1항 제6호, 제123조.)

본 조는 도로가 일반교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교통 안전과 원활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1항: ① 누구도: '누구든 예외 없이' 라는 의미이다. ②신호기 또는 도로표식 등: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제15호에 규정되어 있다. ③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물건: 형상 등 외형이 유사한 물건을 말한다. 따라서 통행금지를 표시하는 도로표식과 외견이 비슷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만, 단순히 통행금지라고 쓰여진 간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공작물: 일반적으로 인위적인 작용에 의해 토지에 고정, 설치된 물건을 말한다. ⑤ 함부로: 「정당한 권한 또는 이유 없이」 라는 의미이다. 신호기 또는 도로표식 등을 설치,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것은 공안위원회뿐이기 때문에, 공안위원회 이외의 사람이 신호기 또는 도로표식 등 또는 이에 유사한 물건을 설치한 경우엔 통상 함부로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

제2항: 「신호기 또는 도로표식 등의 효용을 방해하는」은 신호기 또는 도로표식 등의 표시의 인식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신호기 또는 도로표식 등 또는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물건」을 설치하여 본래의 신호기 또는 도로표식 등의 표시의 인식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은 제1항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으므로, 공작물 또는 물건을 설치하여 물리적으로 신호기 또는 도로표식 등의 표시의 인식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한정된다. 예를 들면, 신호기 근처에 신호기의 등화와 같은 색의 등화를 설치하거나, 광고판을 세워서 도로표식을 잘 보이지 않게 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3. 도로교통법 제115조: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 또는 공안위원회가 설치한 도로표식 또는 도로 표시를 이전 또는 신호기 또는 공안위원회가 설치한 도로표식 또는 도로표식을 손괴한 도로에 교통의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호: 전호 이외, 도로에 진행 중의 차량 등에서 물건을 던지는 것

제6호: 도로에서 진행 중의 자동차, 버스 또는 노면전차에 뛰어들어 승차하거나 또는 뛰어내리거나 또는 밖에서 매달리는 것

제7호: 전 각호 이외에 도로 또는 교통의 상황에 따라, 공안위원회가 도로에 대한 교통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현저히 교통의 방해가 될 위험이 있다고 정한 행위

(별칙: 제3항에 대해서는 제109조 제1항 제12호의4 제123조에, 제4항에 대해서는 제120조 제1항 제9호)

본 조는 신호기, 도로표식, 도로표지의 효용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도로교통법 제76조 제1항, 제2항과 달리, 행위의 성질상 직접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 ① 함부로: '정당한 권한 또는 이유 없이' 라는 의미이다.
- ② 신호기를 조작: 신호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조작은 작동하지 않는 신호기를 작동시키거나, 신호기의 표시를 바꾸거나, 작동하는 신호기를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공안위원회가 설치한 도로표식 또는 도로표시를 이전: 위에서 논한 것처럼, 본 조의 객체는 공안위원회가 설치한 도로에 한정된다. 「이전」은 도로표식 등을 일정 장소에서 다른 장소에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는 데, 장소를 이전시키지 않아도 방향을 바꾸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 ④ 신호기 또는 공안위원회가 설치한 도로표식 또는 도로표식을 손괴: 「손괴」는 신호기 또는 도로표식 등의 물건으로서의 효용을 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드시 물건의 효용 전부를 잃게 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물리적으로 파괴 혹은 그 형태를 변형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도로표식 등을 더럽혀 표시하는 의미, 내용을 알 수 없게 하는 경우, 신호기와 도로표식 등에 종이를 붙이거나 오뚜기식 폴을 고의로 쓰러뜨린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였기 때문에 손괴에 포함된다.

- ⑤ 도로에 교통의 위험을 발생시킨: 실제로 도로에 대한 교통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 대한 교통의 위험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예를 들어 추월금지장소를 지정한 도로 표식을 손괴하여 그 장소가 추월금지장소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 장소는 교통의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도로표식 등을 이전 또는 손괴하였다 해도 「교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조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일방통행의 출구에 설치한 차량 진입금지의 도로표식의 「자전거를 제외」의 보조 표식을 손괴한다 해도 자전거가 역행할 수 없다는 효과는 발생하지만 교통의 위험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 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⑥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 또는 도로표식을 이전, 손괴하는 행위가 도로에 대한 교통의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것에 대한 인식(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이 있으면 본 죄는 성립하며, 행위에 의해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 혹은 교통사고에 의한 실제의 손해의 발생 등까지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된다.

## 명 말 음

(일본주재 외국법제조사원)